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부장

I. 서론

- 최저임금의 인상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정부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하여 낮은 수준의 보수체계를 지닌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수준 향상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 이 연구에서는 타 직종과의 보수비교, 보수실태 현황 조사,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최소기준 「2019년 청소년지도사 표준임금표(안)」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청소년 시기에 건전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에게 있어서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특히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은 1990년대부터 청소년정책의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였으며, 청소년 진로 체험이나 자유학기제 실시 등으로 청소년 체험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도록 하고,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청소년지도사들의 역량과 지위를 함양하고, 는 양질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 청소년지도사는 2023년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으로 사회적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여 역량과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국고용정보원(2015)이 제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13-2023)에서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는 연평균 고용증감률이 3.7%로 7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여줌.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는 2013년 27천 명에서 2023년 40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청소년지도사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선호하는 관창은 일자리가 될 필요가 있음. 현재 청소년지도사들은 유사 직업(사회복지사 등)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로 인해 사기 저하, 높은 이질율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최소한 유사 업무 수준의 보수와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함.
- ▶ 그동안 청소년재단, 공단 등과 달리 따로 보수기준표가 없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10여년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시절에 만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표준임금표에 따라 2018년도에도 임금을 책정 받고 있음. 또한 지역단위에서 보수체계를 상향시키기 위해 지방의회에 관련 건을 상정하여도 의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기준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체계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최근에는 최저임금 결정액에 따른 기본임금 보장 필요성이 증대됨.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060원 오른 시급 7,530원으로 올랐고,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10.9%가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됨. 이는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1,745,150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수체계의 개선이 요청됨.
- ▶ 유사직군인 사회복지분야에서는 2012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급여수준에 준하는 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했고, 아동분야에서는 2018년 7월 국회토론회를 통해 이의 추진을 가시화하고 있음.
- ▶ 제6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수행을 요청함.
-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수실태를 살펴보고, 적절한 보수 수준(최소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수준 분석, 유사업무 직업군의 보수체계 비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

방안 제시, 최소기준 2019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표준(안) 개발 등을 수행함.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현황 조사

- 전국 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및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보수체계 현황을 조사함.

▶ 유사 업무 직업 보수체계 비교

- 선행연구 분석 등을 통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가 현재 어떤 수준인지 분석함.

- 청소년지도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업무 직업의 보수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와 비교함.

▶ 2019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표준(안) 개발

- 청소년지도사 표준임금표(안)를 개발하여 제시함. 아울러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당체계도 가능한 범위에서 간소화하여 제시함.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방안 제시

- 보수체계 현황조사, 타직업군 사례, 전문가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함.

■ 용어의 정의

▶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의 보수 구성체계를 말하며, 보수는 기본급과 법정 수당(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수당)으로 구분됨. 본 연구 조사결과, 수당체계가 시설, 직급, 직위, 지역, 운영주체별로 매우 복잡·다양하여 전체를 포함하여 수당으로 제시함.

II.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 현황

- 전국 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의 종사자 보수현황을 조사함.
- 최종적으로 249개 시설, 2,779명의 종사자 정보를 분석에 활용함.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 조사대상은 전국 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이며, 전국 전체 453개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3일부터 20일까지 조사를 실시함.
- ▶ 조사내용은 시설유형, 운영주체, 직위, 직급, 기본급, 수당 등이며,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협조공문을 통하여 조사지를 기입하도록 하여 조사를 진행함. 최종적으로 249개 시설, 2,779명의 종사자의 응답내용을 분석에 활용함.
-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마다 기본급, 수당이 직위, 직급, 운영단체별로 혼재되어 있어 일정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전체 평균을 통해 보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표 II-1] 분석대상 시설 및 종사자 수

구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전체 시설 수	전체 종사자 수
	시설 수 소계	종사자 수 소계	시설 수 소계	종사자 수 소계		
총합계	125	638명	124	2,141명	249	2,779명

※ 청소년특화시설 7개소(종사자 107명)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포함

■ 시설유형/운영주체별 기본급 및 수당 현황

- ▶ 시설유형별, 운영주체별 기본급 및 수당을 살펴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기본급은 청소년단체가 높게, 학교법인이 낮게 나타남.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지자체설립법인이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단체가 낮게 나타남.

[표 II-2] 시설유형/운영주체별 기본급 평균현황

구분(단위: 원)	지자체	지자체설립법인	청소년단체	학교법인	평균
청소년문화의집	1,744,199	1,766,716	1,777,884	1,543,159	1,765,022
청소년수련관	1,908,782	1,961,825	1,708,155	1,850,763	1,781,567
평균	1,837,786	1,939,997	1,726,091	1,827,721	1,777,769

- ▶ 시설유형별, 운영주체별 기본급 및 수당을 살펴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수당은 지자체설립법인과 학교법인이 높게, 청소년단체가 낮게 나타남.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수당은 지자체설립법인이 높게 나타남.

[표 II-3] 시설유형/운영주체별 수당 평균현황

구분(단위: 원)	지자체	지자체설립법인	청소년단체	학교법인	평균
청소년문화의집	595,666	890,223	449,807	884,111	517,365
청소년수련관	684,155	869,861	556,251	458,882	608,928
평균	645,983	872,139	528,872	490,734	587,907

■ 시설유형/직급별 기본급 및 수당 현황

- ▶ 시설유형 및 직급별 기본급에 있어서 평균은 청소년수련관이 높게 나타남. 구체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1급 2,560,366원, 청소년수련관 1급 3,177,276원, 청소년문화의집 7급 1,588,691원, 청소년수련관 7급 1,528,311원으로 나타남.

[표 II-4] 시설유형/직급별 기본급 평균현황

구분(단위: 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평균
청소년문화의집	2,560,366	2,383,986	2,161,246	2,409,736	1,869,764	1,763,409	1,588,691	1,765,022
위탁	2,560,366	2,476,716	2,261,014	2,490,548	1,874,862	1,762,027	1,564,333	1,768,354
직영		1,973,327	1,837,000	1,440,000	1,797,663	1,780,000	1,711,584	1,744,199
청소년수련관	3,177,276	2,770,954	2,597,718	2,142,412	1,875,356	1,536,035	1,528,311	1,781,567
위탁	3,127,152	2,744,511	2,583,424	2,126,915	1,868,401	1,533,561	1,523,929	1,774,279
직영	4,242,418	3,670,000	2,826,427	2,466,660	1,976,393	1,830,500	1,591,703	1,908,782
평균	3,037,801	2,569,519	2,510,423	2,154,074	1,873,878	1,567,819	1,544,077	1,777,769

※ 직급이 없는 종사자는 7급으로 처리

- ▶ 시설유형 및 직급별 수당에 있어서 총합계 평균은 청소년수련관이 높게 나타남. 구체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 1급 1,060,619원, 청소년수련관 1급 1,113,394원, 청소년문화의집 7급 400,812원, 청소년수련관 7급 390,350원으로 나타남.

[표 II-5] 시설유형/직급별 수당 평균현황

구분(단위: 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평균
청소년문화의집	1,060,619	887,953	837,719	759,947	580,829	593,548	400,812	517,365
위탁	1,060,619	937,016	706,505	798,276	576,544	622,742	368,698	504,837
직영		670,677	1,264,167	300,000	641,434	243,220	562,840	595,666
청소년수련관	1,113,394	1,097,020	1,131,442	914,479	732,404	716,245	390,350	608,928
위탁	1,115,665	1,091,050	1,126,174	912,524	731,714	721,004	377,455	604,619
직영	1,065,155	1,300,000	1,215,734	955,383	742,421	150,000	576,883	684,155
평균	1,101,463	988,191	1,072,697	907,737	692,337	699,094	393,081	587,907

※ 직급이 없는 종사자는 7급으로 처리

■ 직위/직급별 기본급 및 수당 평균현황

- ▶ 1급 관장의 경우 기본급은 3,037,801원, 수당은 1,101,463원으로 나타났으며, 7급 사원의 경우 기본급은 1,544,077원, 수당은 393,081원으로 나타남.

[표 II-6] 직위/직급별 기본급 평균현황

구분(단위: 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평균
관장	3,037,801	2,383,986						2,875,415
실국장		2,770,954	2,161,246					2,571,626
부차장			2,597,718	2,409,736				2,567,548
팀과장				2,142,482	1,869,764			2,067,784
대리					1,889,821	1,763,409		1,873,917
사원				2,137,484	1,712,028	1,536,035	1,544,077	1,546,569
평균	3,037,801	2,569,519	2,510,423	2,154,074	1,873,878	1,567,819	1,544,077	1,777,769

[표 II-7] 직위/직급별 수당 평균현황

구분(단위: 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평균
관장	1,101,463	887,953						1,048,434
실국장		1,097,020	837,719					1,012,249
부차장			1,131,442	759,947				1,071,819
팀과장				913,958	580,829			822,714
대리					741,848	593,548		723,191
사원				951,027	625,763	716,245	393,081	440,618
평균	1,101,463	988,191	1,072,697	907,737	692,337	699,094	393,081	587,907

■ 직급별 공무원/사회복지/청소년수련시설 기본급 비교(2017년 기준)

- ▶ 직급별 비교 결과는 아래와 같고, 총합계를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는 공무원 대비 1,309,363원, 사회복지시설 대비 1,365,831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표 II-8] 직급별 일반직공무원,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기본급 평균현황 비교

구분(단위: 원)	3급/관장	4급/사무국장	5급/1급	6급/2급	7급/3급	8급/4급	9급/5급	월 평균
①일반직공무원	4,471,770	3,964,979	3,653,257	3,161,513	2,862,510	2,577,161	2,343,935	3,290,732
②사회복지시설	3,660,185	3,474,607	3,407,067	3,125,871	2,860,968	2,692,742	2,567,419	3,112,694
③청소년 수련시설	3,037,801	2,569,519	2,510,423	2,154,074	1,873,878	1,567,819	1,544,077	1,777,769
(③-①)공무원 대비 차액	-1,433,970	-1,395,460	-1,142,833	-1,007,439	-988,632	-1,009,342	-799,858	-1,512,964
(②-①)사회복지시설 대비 차액	-622,385	-905,088	-896,643	-971,797	-987,090	-1,124,923	-1,023,342	-1,334,926

* 자료: 일반직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2017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201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III. 타 직종과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비교

- 청소년지도사의 월 급여는 보건 및 사회복지, 종교 관련직을 비롯한 타 직종 및 유사직종 종사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반면 청소년지도사는 임금 가이드라인은 물론 관련 법률에 의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 기인함.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월 급여 수준

- ▶ 청소년지도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분류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소분류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에 포함됨.
- ▶ 임금에 관한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정액급여, 초과급여와 연간특별급여 등

상세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음. 이 조사는 매년 표본사업체 약 33,0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 조사는 중분류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사가 포함되어 있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월 급여 수준을 살펴보고자 함.

[표 III-1]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월 급여 추이

(단위: 천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직업	월 급여액	2,754	2,820	2,892	3,002
	정액급여	2,545	2,607	2,686	2,779
	초과급여	209	212	207	222
	연간특별급여	5,777	5,389	5,508	5,338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월 급여액	2,410	2,483	2,550	2,740
	정액급여	2,284	2,354	2,421	2,608
	초과급여	126	129	129	132
	연간특별급여	2,520	2,448	2,403	2,442

* 자료: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 ▶ 최근 조사에서 월 급여액은 전년도 연간 특별급여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급여 총액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전 조사에서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만을 합산해 월 급여액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월 급여액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 전체 직업과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월 급여액을 비교해 보면, 전체 직업 월 급여액의 90% 내외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급여액 차이는 2014년 87.5%에서 91.2%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지도사의 월 급여 수준

- ▶ 청소년지도사의 월 급여 수준은 정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통계청 승인통계에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현황 통계편람」에서도 청소년지도사의 임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중 청소년지도사의 월 급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지도사의 월 급여 수준을 살펴보고자 함.
- ▶ 맹영임, 길은배, 전명기(2010)는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와 복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상근 청소년지도사

1,54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월 급여 수준은 2010년 현재 17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유형별로 볼 때 청소년수련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의 급여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 청소년지도사 월 급여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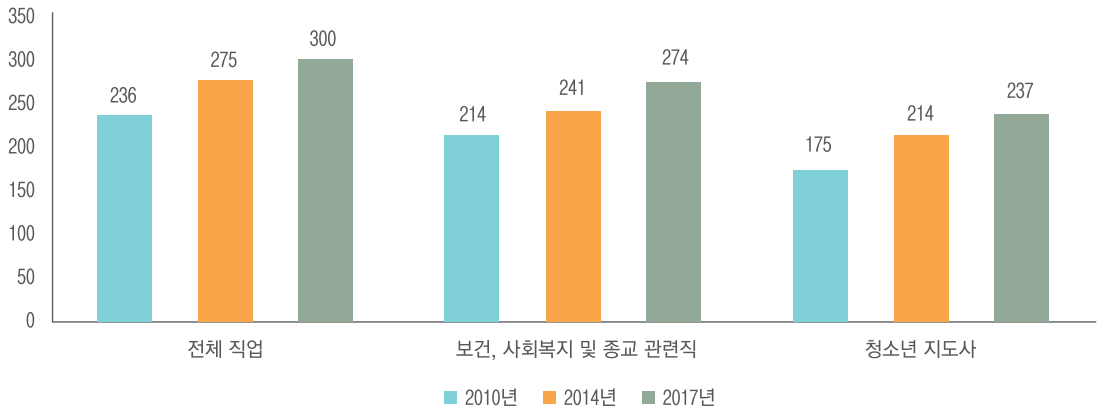
구분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기간	월 급여	유형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맹영임 외(2010)	1,545명	우편조사	'10. 7-8.	175만원	178만원	171만원	168만원
황진구(2014)	884명	온라인조사	'14. 6.	214만원	238만원	201만원	226만원
황진구(2017)	171명 ¹⁾	팩스조사	'17. 10-11.	194만원			
본 연구(2018)	2,779명	온라인조사	'18. 7.	237만원	239만원	-	228만원

1) 2017년 조사 대상은 청소년지도사 중 정부로부터 배치지원을 받는 청소년지도사로 한정된 결과임.

- ▶ 황진구(2014, 2017)는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지도사의 월 급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음. 2017년의 결과는 정부로부터 배치지원을 받는 청소년지도사에 한정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2014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사의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 214만 원의 월 평균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임.
- ▶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함께 2,779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월 급여 수준을 조사하였음. 공공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월 급여액은 기본급과 모든 수당 등을 합하면 237만 원으로 나타남.

■ 다른 직업과 청소년지도사 임금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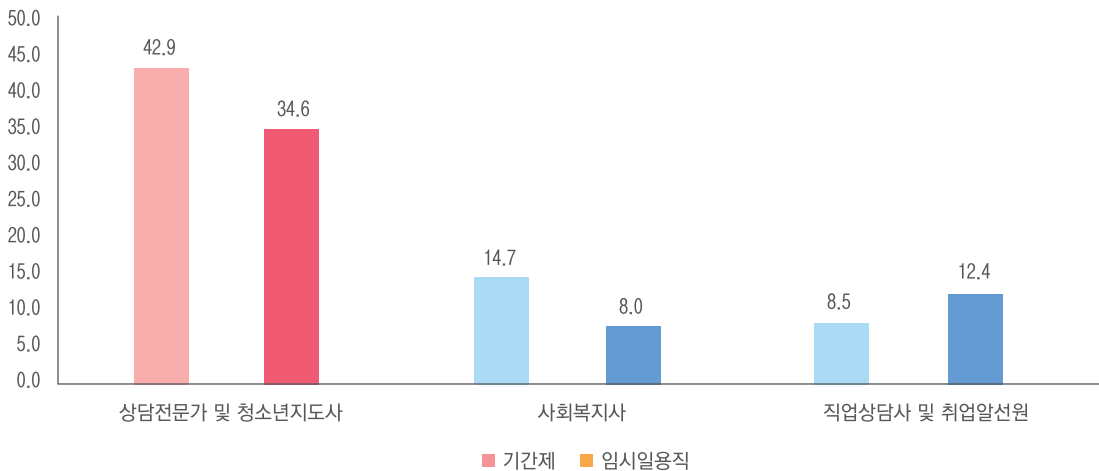
- ▶ 청소년지도사의 월 급여 조사 시점의 결과와 전체 직업,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월 급여액을 비교해 보고자 함. 청소년지도사의 2017년 조사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임금조사 결과임.
- ▶ 2010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전체 직업(5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월 평균급여액은 236만 원인데 비해 청소년지도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급여 수준은 214만 원이며 청소년지도사는 175만 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전체 직업과 청소년지도사의 임금 차이는 2010년 74.1% 수준에서 2014년 77.8%, 2017년 79.0%로 나타남.
- ▶ 「한국직업전망」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위별 임금수준과 관련하여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와 동일 직업군(사회복지 관련직)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과 비교해 보고자 함.



[그림 III-1] 전체 직업 및 청소년지도사 월평균 보수 비교(단위:만원)

* 자료: 고용노동부(2010, 2014, 201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pp. 98-99. 청소년시설 증가의 결과는 맹영임 외 (2010), 황진구(2014), 본 조사(2018) 결과임.

- ▶ 특정 직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경우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관련 동일 직업군 내 비정규직 비율과 비교해 본 결과,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의 기간제 및 임시·일용직 비율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동일 직업군내 다른 직업에 비해 청소년지도사의 급여 수준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그림 III-2] 청소년지도사 관련 직업 기간제 및 임시일용직 비율 비교(%)

* 자료: 이시균, 황규성, 박세경(2013)

- ▶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임금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볼 수 있음. 사회복지사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시도에서 이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정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준하는 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 보장이 이루어짐.

- ▶ 반면, 청소년지도사는 임금 가이드라인은 물론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공공영역에서 근무 중인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들은 2007년 이후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직업상담직렬이 신설되었으며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 전환되었음. 이후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에서 직업상담직렬로 직업상담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IV. 보수체계 개선(안):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최소 인건비 가이드라인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이행과 방향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 등 타 직종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 수준 최저기준을 제시함.
- 청소년재단, 공단, 법인 등은 현행대로 자체 보수기준표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재량으로 수당 등을 통해 법적 요건 구비
- 기본급은 2018년도 사회복지공무원 기본급에 공무원임금 예상인상률 적용
- 수당은 복잡한 수당체계를 10종의 수당으로 간소화하고 각각의 지급기준 제시

■ 보수체계 개선(안) 마련 취지

- ▶ 국가 표준보수기준표 부재 극복 및 현장의 요구 반영
 - 국가청소년위원회 시절 만들어졌던 표준보수기준표를 지자체에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의 누진적 하락 초래
 - 현실을 반영한 국가 표준보수기준표 정립 및 지자체와 청소년정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표준보수기준표 마련
-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이행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중점과제인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의 실행과제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천명
 -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기준표를 마련하고 지자체 청소년정책 성과평가 지표에 보수기준표 적용 여부 반영하겠다는 취지 이행
- ▶ 사회복지사 등 유사직업과의 비교
 - 사회복지분야는 정부와 지자체, 사회복지사 등의 노력으로 2012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통하여 보수체계를 개선함.
 - 사회복지사 등과 비교해서 업무량 등이 비슷하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체계 하에 있으며, 복지수준도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청됨.

▶ 최저임금 인상 등 국가정책에 부응

-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함. 더욱이 2019년도 최저임금도 10.9% 인상되었으나 현재의 표준보수기준표는 그 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함.

■ 2019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최저기준 안)

▶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기준

-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기준을 2019년 공무원 기본급(2018년 대비 1.8% 인상)을 기준으로 1안) 급수 및 호봉별 차등적용, 2안) 98% 일괄적용의 두 가지 안을 제시함.

▶ 1안) 2019년 공무원 기본급 대비 급수 및 호봉별 차등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9년도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 기준으로 급수별 및 호봉별 차등 적용
- 유사직종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책정기준 고려
- 재정적 부담이 높은 시기인 평균초혼연령과 2019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4급 10~14호봉을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 100% 기준으로 임금격차 축소 및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하후상박(下厚上薄) 적용
 - ※ 초혼연령 남자 32.9세, 여자 30.2세 [통계청; 2017년 혼인·이혼 통계]
- 적용비율(안)

[표 IV-1] 2019년도 공무원 기본급 기준대비 급수/호봉별 적용기준

급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적용율	80% ~ 84%	85% ~ 90%	90% ~ 98%	100% ~ 98%	103% ~ 99%	108% ~ 103~	115% ~ 110%

▶ 2안) 2019년 공무원 기본급 대비 98% 일괄적용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2018년도에서 1.8% 인상된 2019년도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 기준 98% 수준으로 일괄적용

▶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최저월급 1,745,150원(2019시간 기준)을 준수함.(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준용)

- 1안)의 7급 1호봉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별도 추가 포함하여야 함.
- 2안)의 6급 1~2호봉, 7급 1~5호봉의 경우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별도 추가 포함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직급은 1급~7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위는 관장부터 사원까지 분포되어 있음. 청소년수련시설 규모별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수용정원) 기준으로 직위 차등 적용
- ▶ 비교를 위하여 공무원은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9급부터 역산하여 3급까지로 비교직급 설정(관장의 경우 교수, 계장 등이 부임).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직급과 유사한 장애인시설을 비교기준으로 적용함.
- ▶ 직급 및 직위 비교표는 실태조사 결과 정규분포를 고려하여 300명과 700명을 기준으로 분류함. 절대적인 안은 아니며, 지역특성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표 IV-2]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 이용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급 · 직위				비고 (승급기간)
		급수	수용정원 700명 이상	수용정원 699~300명	수용정원 300명 미만	
3급	관장	1급	관장			
4급	사무국장	2급	실(국)장	관장, 원장		4년
5급	1급	3급	부(차)장	부(차)장	관장, 원장	4년
6급	2급	4급	팀(과)장	팀(과)장	팀(과)장	4년
7급	3급	5급	대리/주임	대리/주임	대리/주임	4년
8급	4급	6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9급	5급	7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 개정 2019년 보수체계의 활용

- ▶ 최저기준이라는 적용기준 명시
 - 제시된 2019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는 최저기준 권고 사항임. 재단 및 공단, 법인 등 자체 보수기준표를 보유한 기관은 자체 보수기준표에 따라 현행처럼 지급, 권고 보수체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권고사항 준수
- ▶ 기본급과 수당의 관계 설정 유의
 - 기관별, 지역별, 시설별, 운영주체별 수당이 다양하고 기본급과 수당의 비율도 상이하여 단일안 도출이 어려움. 일단 수당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임금산입 가능 수당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수체계 안을 상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최저 기본급 권고기준(1안)

[표 IV-3]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최저 기본급 권고 기준(1안)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564,460	2,335,270	2,209,690	2,005,150	1,872,160	1,733,990	1,696,110
2	2,659,420	2,430,710	2,299,020	2,098,380	1,957,510	1,818,190	1,761,200
3	2,757,070	2,527,620	2,391,640	2,194,730	2,028,120	1,907,070	1,828,860
4	2,855,530	2,626,790	2,488,030	2,293,090	2,122,200	1,997,700	1,917,290
5	2,992,480	2,759,420	2,615,630	2,394,270	2,197,830	2,072,370	1,992,730
6	3,094,730	2,862,110	2,717,620	2,498,380	2,296,640	2,168,080	2,085,790
7	3,198,210	2,965,770	2,821,190	2,602,690	2,396,270	2,264,120	2,178,390
8	3,301,940	3,069,950	2,926,060	2,707,400	2,496,310	2,356,270	2,267,780
9	3,406,580	3,174,400	3,031,200	2,812,420	2,591,520	2,444,330	2,353,250
10	3,554,490	3,316,880	3,171,660	2,940,280	2,682,520	2,503,570	2,413,940
11	3,660,420	3,423,430	3,271,590	3,034,650	2,768,270	2,583,530	2,491,700
12	3,770,360	3,523,590	3,368,150	3,127,500	2,852,480	2,661,560	2,569,000
13	3,872,530	3,617,470	3,459,740	3,214,940	2,932,470	2,736,590	2,643,110
14	3,967,280	3,704,980	3,545,250	3,297,500	3,008,960	2,808,100	2,715,060
15	4,104,040	3,830,880	3,665,300	3,343,040	3,051,450	2,849,540	2,758,950
16	4,186,590	3,909,440	3,742,080	3,416,510	3,119,960	2,915,290	2,824,950
17	4,263,220	3,982,450	3,814,220	3,486,750	3,185,620	2,976,690	2,889,350
18	4,334,450	4,050,630	3,882,390	3,553,170	3,248,430	3,036,400	2,949,360
19	4,400,360	4,114,320	3,946,670	3,616,050	3,307,480	3,093,580	3,008,340
20	4,515,800	4,221,230	4,049,870	3,675,310	3,330,240	3,117,830	3,037,120
21	4,573,600	4,277,500	4,107,100	3,732,360	3,383,450	3,169,420	3,089,640
22	4,627,140	4,330,230	4,160,880	3,785,970	3,433,740	3,219,010	3,140,140
23	4,676,560	4,379,790	4,211,690	3,836,260	3,482,220	3,266,090	3,188,180
24	4,722,650	4,426,360	4,259,060	3,884,230	3,528,470	3,311,600	3,234,430
25	4,817,290	4,519,340	4,349,720	3,890,190	3,536,030	3,354,690	3,248,740
26	4,853,900	4,555,890	4,392,370	3,932,690	3,577,430	3,396,640	3,288,130
27	4,887,900	4,589,610	4,427,770	3,973,200	3,612,550	3,431,450	3,322,090
28		4,621,860	4,461,810	4,007,120	3,645,170	3,465,110	3,354,930
29			4,493,050	4,038,940	3,676,800	3,496,880	3,386,440
30			4,523,410	4,070,370	3,706,930	3,527,700	3,417,180
31				4,099,400	3,735,260	3,557,590	3,447,250

* 원단위 절사

* 7급 1호봉의 기본급은 2019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별도 추가 포함하여야 함.

*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최저월급 1,745,150원(2019시간 기준) 준수(2019.1.1.~2019.12.31.)

■ 2019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최저 기본급 권고기준(2안)

[표 IV-4]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최저 기본급 권고 기준(2안)

호봉 \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3,141,460	2,692,430	2,406,100	1,984,900	1,781,280	1,588,140	1,445,380
2	3,257,790	2,802,470	2,503,370	2,077,180	1,862,490	1,665,260	1,500,850
3	3,377,410	2,914,200	2,604,230	2,172,560	1,948,590	1,746,660	1,572,180
4	3,498,020	3,028,530	2,709,190	2,269,930	2,038,970	1,829,670	1,648,200
5	3,620,530	3,144,460	2,816,830	2,370,090	2,132,550	1,915,960	1,728,210
6	3,744,240	3,261,480	2,926,670	2,473,150	2,228,420	2,004,450	1,808,920
7	3,869,440	3,379,600	3,038,210	2,576,400	2,325,100	2,093,240	1,889,230
8	3,994,950	3,498,320	3,151,140	2,680,060	2,422,170	2,178,440	1,966,740
9	4,121,550	3,617,340	3,264,370	2,784,010	2,514,550	2,259,850	2,040,870
10	4,248,050	3,736,260	3,378,500	2,881,480	2,602,840	2,336,670	2,112,200
11	4,374,650	3,856,270	3,484,950	2,973,960	2,686,040	2,411,290	2,180,240
12	4,506,040	3,969,110	3,587,810	3,064,950	2,767,750	2,484,120	2,247,880
13	4,628,150	4,074,860	3,685,380	3,150,640	2,845,360	2,554,150	2,312,720
14	4,741,380	4,173,420	3,776,460	3,231,550	2,919,590	2,620,900	2,375,680
15	4,845,730	4,266,200	3,862,360	3,309,270	2,990,420	2,685,140	2,435,830
16	4,943,200	4,353,700	3,943,270	3,382,000	3,057,560	2,747,100	2,494,100
17	5,033,690	4,435,000	4,019,290	3,451,530	3,121,910	2,804,960	2,550,960
18	5,117,790	4,510,920	4,091,120	3,517,280	3,183,460	2,861,230	2,603,940
19	5,195,600	4,581,860	4,158,860	3,579,530	3,241,330	2,915,100	2,656,010
20	5,268,430	4,648,100	4,222,210	3,638,190	3,296,600	2,966,480	2,705,790
21	5,335,870	4,710,050	4,281,870	3,694,660	3,349,270	3,015,560	2,752,580
22	5,398,330	4,768,120	4,337,930	3,747,730	3,399,050	3,062,750	2,797,580
23	5,455,990	4,822,690	4,390,910	3,797,510	3,447,040	3,107,540	2,840,380
24	5,509,760	4,873,970	4,440,290	3,845,000	3,492,830	3,150,840	2,881,580
25	5,554,060	4,921,050	4,487,080	3,890,190	3,536,030	3,191,840	2,920,890
26	5,596,260	4,960,860	4,531,080	3,932,690	3,577,430	3,231,750	2,956,300
27	5,635,460	4,997,570	4,567,590	3,973,200	3,612,550	3,264,870	2,986,830
28		5,032,690	4,602,710	4,007,120	3,645,170	3,296,900	3,016,360
29			4,634,930	4,038,940	3,676,800	3,327,120	3,044,690
30			4,666,260	4,070,370	3,706,930	3,356,460	3,072,330
31				4,099,400	3,735,260	3,384,890	3,099,360

* 원단위 절사

* 6급 1, 2호봉과 7급 1~5호봉의 기본급은 2019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별도 추가 포함하여야 함.

* 2019년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최저월급 1,745,150원(2019시간 기준) 준수(2019.1.1.~2019.12.31.)

■ 1안)과 2안) 비교

- ▶ 일반직 공무원 기본급에 비해 1안)은 청소년시설 1급에서 812,064원 적고, 7급은 268,751원 많게 나타남. 일반직 공무원도 낮은 급수의 최저임금 상향조정이 예상되며 결국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됨. 2안)은 청소년시설 1급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93,737원 낮은 수준이고, 청소년시설 7급도 49,141원 낮게 나타남.
- ▶ 사회복지시설 기본급에 비해 1안)은 청소년시설 1급에서 51,886원 높고, 7급은 44,252원 높게 나타남. 2안)은 청소년시설 1급은 사회복지시설 보다 770,213원 높고, 청소년시설 7급은 273,639원 낮음.
- ▶ 최저임금의 극복, 직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1안)을 선택하여 최저수준 청소년지도사 보수기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함.

[표 IV-5] 19년 기본급 월평균 비교표

구분	3급/관장/1급	4급/국장/2급	5급/1급/3급	6급/2급/4급	7급/3급/5급	8급/4급/6급	9급/5급/7급
①2019 일반직공무원	4,686,840	4,155,670	3,828,940	3,313,540	3,000,180	2,701,100	2,457,040
②2019 사회복지시설	3,822,890	3,629,070	3,558,530	3,264,810	2,987,740	2,745,030	2,681,540
③청소년시설 실태 (2017 기준)	3,037,800	2,569,510	2,510,420	2,154,070	1,873,870	1,567,810	1,544,070
④2019 청소년시설 최저기본급1안)	3,874,780	3,648,140	3,560,130	3,276,220	2,992,400	2,814,230	2,725,790
⑤2019 청소년시설 최저기본급2안)	4,593,100	4,072,550	3,752,370	3,247,270	2,940,170	2,647,080	2,407,900
④ - ①	-812,060	-507,520	-268,810	-37,310	-7,770	113,120	268,750
④ - ②	51,880	19,060	1,590	11,410	4,660	69,190	44,250
④ - ③	836,980	1,078,620	1,049,700	1,122,150	1,118,530	1,246,410	1,181,710
⑤ - ①	-93,730	-83,110	-76,570	-66,270	-60,000	-54,020	-49,140
⑤ - ②	770,210	443,480	193,830	-17,540	-47,570	-97,950	-273,630
⑤ - ③	1,555,300	1,503,040	1,241,940	1,093,200	1,066,290	1,079,260	863,820
⑤ - ④	-718,320	-424,410	-192,230	28,950	52,230	167,140	317,890

* 원단위 절사, * 구분의 가로는 공무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시설 직급임.
 * ①일반직 공무원 및 ②사회복지시설은 2019년도의 1.8%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임.

■ 수당체계(안)

▶ 시설의 복잡한 수당체계를 10종으로 간소화 및 지급기준 제시

- 본 연구의 보수체계 현황조사 결과 수당체계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수당지급액의 편차를 줄이고, 복잡한 수당계산 등 문제해결을 위해 간소화하여 제시

[표 IV-6]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수당체계(안)

수당 종류	지급 기준				
①기말수당	- 지급기준: 월봉급액(기본급)의 100% - 지급시기 및 지급액: 50%씩 연 2회 지급(1, 7월 또는 6, 12월)				
②가족수당	- 지급기준: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단, 자녀의 경우 4명 초과 허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매월 배우자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0만원				
③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기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 제외) - 지급시기: 연 4회(2, 4, 8, 11월), 신입생은 3월 지급 - 지급액: 상한액 46만원 범위 내에서 학비 전액 지급				
④육아휴직수당	- 지급액: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하한 50만원) - 고용보험법, 공무원 수당 등 규정 참고				
⑤자격증수당	- 지급기준: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차등지급 - 지급액: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				
⑥초과근무수당	-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 초과근무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4~7급	(초과근로시간)×(월통상임금)×(1/209)×(1.5)		
관리업무수당	1~3급	월봉급액(기본급)의 9%			
⑦정액급식비	- 지급기준: 정액 월 13만원				
⑧명절휴가비	- 지급기준: 월 보수(기본급)의 120% - 지급시기: 60%씩 2회 지급(설, 추석)				
⑨연가보상비	- 산출기준: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시간)×잔여연가일수 -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⑩교통보조비	- 지급기준: 직급별 매월 12~15만원 - 지급액				
	직 급	1~2급	3~4급	5~6급	7급
	지급액	150,000원	140,000원	130,000원	120,000원

V.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적으로 최저기준으로서의 개정 2019년 보수체계의 활용방안, 향후 보수체계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실시 등의 정책적 제언, 안정적인 보수체계 유지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등을 제시함.

■ 향후 보수체계 개발을 위한 제언

▶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분석 실시

- 임금 및 보수체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직무분석은 가장 보편화된 방식임.
- 공공청소년수련시설뿐만 아니라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보호, 복지 및 상담 시설 등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직무분석 결과는 타 직종과의 비교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표준 보수체계 마련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체계 조사 실시

- 사회복지분야와 같이 전국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체계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수체계 결정의 주요 자료로 활용

▶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학계, 현장 전문가로 가칭 『○○○○년도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확정위원회』를 운영하여 매년 익년도 예산배정 전 보수(안)을 결정하도록 함.

■ 안정적 보수체계 유지를 위한 법·제도 완비

▶ 청소년지도사 보수수준의 책정조항 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의 3항을 보다 적극적인 조항으로 개정
- 예를들면 현재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가 별정직으로 책정되어 있어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수준을 일반직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하도록 법률 개정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개정 전	개정 후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 청소년지도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조항 신설

-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의 4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지도사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파악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매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지도사 실태조사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개정 전	개정 후(신설)
<p>관련 조항 없음</p>	<p>④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p>

- 청소년기본법의 시행령에 청소년지도사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신설, 신설될 조항의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벤치마킹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신설)
<p>관련 조항 없음</p>	<p>제○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청소년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청소년단체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p>

▶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체계화 및 전문화

- 현재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진입장벽의 체계화 필요
- 청소년학의 구조를 전문화하고, 이에 따른 필수 교과목 재책정, 교과목별 교수요목 재설정, 기관실습의 체계화 등 자격검정제도의 전문화 추진

▶ 기타 제도적인 부분 강화

-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청소년수련시설평가에 보수수준 지표 반영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표준보수체계에 따른 보수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의 근거 마련
- 각종 수당의 산출과 지급이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법에 따라 명확히 지급되도록 지도감독 강화

■ 청소년정책현장의 자발적인 노력

▶ 청소년지도사들 스스로 자발적인 청소년지도사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전국 청소년지도사들 스스로 가칭「청소년지도사협회」등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 경주
- 장기적으로 협회 등을 법제화하여 법정기구로서 운영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 필요

▶ 청소년지도사의 권리 및 정당한 보수체계 확보를 위한 활동 필요

- 각종 선거 등에 청소년지도사의 권리(보수체계 등)를 정책과제로 전달
- 청소년문제, 사회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 등에 적극적 제안
- 정부나 시민들의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교육훈련 적극참여

- 청소년지도사 연관 보수교육 및 전문교육 등에 적극참여
- 청소년지도사들 스스로 학습동아리를 통한 개별역량 증대

참고문헌

고용노동부(각 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맹영임, 같은배, 전명기(2010).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시균, 황규성, 박세경(2013). 사회서비스의 인력수급 전망: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2013, 2015).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2018). 2017년 혼인·이혼 통계.
한국고용정보원(2015). 한국직업전망 2015. 진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2017). 한국직업전망 2017. 진천: 한국고용정보원.
황진구(2014). 청소년 수련시설 중사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방안 연구 -보수체계를 중심으로-.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Vol. 5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진구(2017).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